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-71호

국제우편규정 제3조 및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국제특급우편(EMS)의 요금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4년 12월 30일

우 정 사 업 본 부 장

국제특급우편(EMS) 요금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

1. 계약국제특급우편 요금감액

가. 대 상 :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국제특급우편(EMS)을 발송하는 이용자 (단, 환적프로세스 이용자 제외)

나. 기준금액과 감액률

(금액단위 : 1개월, 만원)

기준금액	50초과 ~150	150초과 ~500	500초과 ~1,000	1,000초과 ~2,000	2,000초과 ~5,000	5,000초과 ~10,000	10,000초과 ~20,000	20,000초과 ~70,000	70,000초과
감액률	4%	6%	8%	10%	12%	15%	18%	21%	24%

※ 단, 21%이상 감액률은 해당 지방우정청의 승인 후 적용

※ 감액 시 기준금액은 고시된 요금(EMS 프리미엄은 요금표) 기준이며, 수수료는 제외

2. 수시국제특급우편 요금감액

가. 대 상 : 별도의 이용계약을 맺지 않고 1회에 이용금액 30만원을 초과하여 국제특급우편(EMS)을 발송하는 창구접수 이용자

나. 기준금액과 감액률

(금액단위 : 만원)

기준금액	30초과~50	50초과
감액률	3%	계약국제특급우편 감액률 준용

※ 단, 감액조건의 금액은 고시된 요금(EMS 프리미엄은 요금표) 기준이며, 수수료는 제외

3. 환적프로세스를 이용한 국제특급우편 요금감액

가. 대 상 :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환적프로세스를 통해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국제특급우편(EMS)을 발송하는 이용자

나. 기준금액과 감액률

(금액단위 : 1개월, 만원)

기준금액 / 감액률 (지역/중량구분)	50초과 ~150	150초과 ~500	500초과 ~1,000	1,000초과 ~2,000	2,000초과 ~5,000	5,000초과 ~10,000	10,000초과
- 1~4지역 전중량 - 특정 1~6지역 2kg이상	4%	6%	8%	10%	12%	15%	18%
- 특정1~3지역 2kg미만	4%	6%	8%	10%	12%		

※ 단 러시아행은 기준금액에는 포함하되, 감액대상에서 제외

※ 감액 시 기준금액은 고시된 요금 기준이며, 수수료는 제외

다. 적용방법 : 전체 접수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고, 지역 및 중량 구간별로 감액률 차등 적용

4. 특별감액

구 분	감 액 요 건	감액률	비 고
장기이용고객	o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직전 계약기간 이용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o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고 직전 계약기간 이용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※ 감액조건의 금액은 고시된 요금(EMS 프리미엄은 요금표) 기준이며, 장기이용고객 감액대상에 일괄계약고객 및 환적프로세스 이용고객은 제외	1%p 2%p	요금감액에 추가 적용
e-Shipping	o 인터넷 접수시스템(e-Shipping)을 통해 접수 ※ 수시국제특급우편 이용고객은 제외	2%p	
이용 활성화	o 우정사업본부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지정한 일정기간에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는 경우	0.5% ~ 10%	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

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,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4-17호(2014.4.1.)는 폐지한다.

2. (기존 계약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기존의 계약국제특급우편 이용자는 연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한 해당 월의 말일까지 이전 고시 제2014-17호(2014.4.1.)에 따른다.

3. (장기이용고객 감액 적용) 장기이용고객 적용은 최초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연속된 계약자에게 적용하며, 사업장 또는 물류창고 이전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우체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후부터 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한다.